

대구고등법원 2024. 11. 19 선고 2024나137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4. 11. 19 선고 2024나1377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84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익현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씨 담당변호사 김재철

변론 종결2024. 10. 22.

판결 선고2024. 11. 19.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840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2022. 7.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며, 위 청구취지에서 새롭게 정한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30,000,000"을 "300,000,00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과 제12면 제3행의 각 "1,976,725원"을 "1,916,725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과 제7면 아래에서 제9, 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을 "C"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과거 다른 태양광 공사업자와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직불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며,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약정금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등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2022. 6. 15. 공사계약보증금 이행을 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149,160,000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C에 지급한 계약금 99,440,000원(= 48,000,000원 + 51,440,000원)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뿐 아니라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중도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22. 7. 1. 채권최고액 397,1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후 피고는 C의 하도급업체에 3차례에 걸쳐 21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2022. 12. 1.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동기,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거 다른 공사업자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임의로 유용하는 등으로 피고가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다면, 피고로서는 C의 재정상황이나 공사이행능력 등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⑤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이성욱

판사주우현

별지